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81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신탁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6649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28,610,3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702,982,83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602,861,0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70,298,28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